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9일(월요일)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85 당사 본사 3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38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2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영훈) 【별첨 2】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오명전) 【별첨 3】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방법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 참석

○ 본인 참석 : 주총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등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나.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9일 9시 ~ 2021년 3월 28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여러분께서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이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대성홀딩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정 주 (직인생략)

정관 변경(안)

■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제350조 제3항, 제423조 제1항 후단 등의 개정으로 신주와 구주가 (동등배당)동액배당이 가능해져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들을 모두 삭제

개정 전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주식</p> <p>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①~⑤생략</p> <p>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의 4(신주의 배당기산일)</p> <p>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사채</p> <p>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①~⑤생략</p> <p>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①~⑤생략</p> <p>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계산</p> <p>제44조의 3(중간배당)①~③생략</p> <p>④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주식</p> <p>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①~⑤좌동</p> <p>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후단 삭제)</p> <p>제10조의 4(동등배당)</p> <p>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과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사채</p> <p>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①~⑤좌동</p> <p>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p>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①~⑤생략</p> <p>⑥(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계산</p> <p>제44조의 3(중간배당)①~③좌동</p> <p>④(삭제)</p>	<p>상법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에 있어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언제 인지와 관계 없이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구주와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내용 정비</p> <p>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p>

■ 주식 등의 전자등록으로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중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 업무(명의개서대행폐지)는 사라져 문구 정비

개정 전	개정안	비고
제2장 주식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①~③생략 ④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주식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①~③좌동 ④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 사라진 현황을 반영

■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 파악에 필요한 소유자 명세를 전자등록기관에 요청 가능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

개정 전	개정안	비고
(신설)	제2장 주식 제11조의 2(주주명부 작성·비치) ①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주총 전자투표 결의요건 완화 등 개정상법 반영

개정 전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감사위원회</p> <p>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생략)</p> <p>④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⑥(생략)</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감사위원회</p> <p>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좌동)</p> <p>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u>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u>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⑥(좌동)</p> <p>⑦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p> <p>⑧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개정상법 제542조의 12 제2항 반영</p> <p>개정상법 제542조의 12 제7항 및 8항 반영</p> <p>개정상법 제542조의 12 제4항 반영</p>

■ 부칙

개정 전	개정안	비고
	<p>부칙 (2021.03.29)</p> <p>①(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별첨2

사내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가. 사내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후보자성명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김영훈	이사회	본인	해당없음

나. 사내이사 후보자의 세부경력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김영훈	대성홀딩스 대표이사	2019년 ~ 현재	現) 세계에너지협의회 (World Energy Council) 명예회장
		2019년 ~ 현재	現)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2016년 ~ 현재	現)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2005년 ~ 현재	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명예대학원장
		2002년 ~ 현재	現)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재계회의 한국위원
		2000년 ~ 현재	現) 대한상공회의소 한몽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2013년 ~ 2019년	前) 세계에너지협의회 (world Energy Council) 회장
		2013년 ~ 2016년	前) 제22차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 공동위원장

다. 사내이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영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별첨3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후보자성명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오명전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자의 세부경력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오명전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2년 9월 ~ 현재	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0년 6월 ~ 현재	現)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2019년 11월 ~ 현재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상담위원
		2019년 5월 ~ 현재	現)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2018년 9월 ~ 2020년 8월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17년 2월 ~ 2019년 2월	前) 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다.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명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